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21 선고 2024가단524145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이준석

피고 1. A

2.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마준

변론 종결 2024. 10. 17.

판결 선고 2024. 11. 21.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620,757원 및 그 중 38,461,374원에 대하여는 2023. 12. 26.부터, 10,106,236원에 대하여는 2024. 1. 29.부터 각 2024. 7. 2.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3. 5. 9. 체결된 매매계약은

48,620,757원 및 그 중 38,461,374원에 대하여는 2023. 12. 26.부터, 10,106,236원에 대하여는 2024. 1. 29.부터 각 2024. 7. 2.까지는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9. 11. 14. 보증금액 5,000만 원, 보증기한 2024. 10. 23.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C, 이하 '제1보증서'라 한다)를, 2021. 3. 2. 보증금액 2,000만 원, 보증기한 2026. 3. 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D, 이하 '제2보증서'라 한다)를, 2022. 5. 13. 보증금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27. 5. 12.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이하 '제3보증서'라 한다)를, 2023. 1. 25. 보증금액 1,000만 원, 보증기한 2028. 1. 25.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서(보증번호 E, 이하 '제4보증서'라 한다)를 각각 발급해 주었고, 피고 A는 위 각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며 F은행(제1보증서), G은행(제2, 3보증서), H은행(제4보증서)로부터 각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A는 2023. 8. 24.경 위 각 대출금의 원리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위 각 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통지함에 따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각 일자에 각 은행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이후 각 금액을 회수하였다.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미회수 대위변제금은 아래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F은행	2023. 12. 26.	15,875,406		15,875,406
G은행	2023. 12. 26.	13,095,671	176,870	12,918,801
G은행	2023. 12. 26.	9,740,027	72,860	9,667,167
H은행	2024. 1. 29.	10,202,446	96210	10,106,236
합계	48,567,610			

다. 한편, 원고와 피고 A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률은 현재까지 연 7%이다.

라. 피고 A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중 2023. 5. 29. 이를 피고 B에게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하였고,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등기와 2023. 8. 18. 접수 제63507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 잔액 48,620,757원 및 그 중 38,461,374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3. 12. 26.부터, 10,106,236원에 대하여는 대위변제일인 2024. 1.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24. 7. 2.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7%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 A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처분함으로써 그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켰는바, 위와 같은 피고 A의 행위는 이후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구상금 채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 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다. 피고 B의 선의 인정 여부

또한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서로 안면이 없는 사이로, 공인중개사 I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거래하게 된 점, 피고 B은 평소 좋아하던 그라운드 골프 운동을 계속 하기 위하여 골프장과 원거리에 있던 자신의 집을 처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점에서도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정윤주

별지